

# 하남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2352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1. 11. .  
제출자 : 하남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상위법 「지방자치법」(2022. 1. 13. 시행, 2021. 4. 20. 일부개정)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, 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면서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의 책무(안 제2조~제3조)
  - 제출 의견의 존중, 필요한 조치 시행
- 나. 의견제출 제외 대상(안 제4조)
  -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
- 다. 의견제출 방법, 보완요구(안 제5조~제6조)
  -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작성하여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 제출
  -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인에게 보완요구
- 라. 의견제출 검토(안 제7조)
  - 하남시 조례·규칙심의회가 대행하여 심의
  - 의견제출서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검토결과 회신
- 마. 의견의 반영(안 제8조)
  - 정당한 의견일 경우 규칙 제정·개정·폐지 등 조치

바. 차별대우의 금지(안 제9조)

-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 조치 금지  
사. 비밀 준수의 의무 등(안 제10조)

- 의견제출처리와 관련된 업무 종사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준수

### **3. 제정조례안 : 덧붙임**

### **4. 신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**

### **5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**

### **6. 예산수반 사항 : 해당없음**

### **7. 입법예고 결과**

가. 예고기간 : 2021. 10. 1. ~ 2021. 10. 21. [20일간]

나. 의견내용 : 의견없음

### **8. 부서협의 결과**

가. 규제개혁 관련협의 : 해당없음

나. 성별영향 분석평가 : 의견없음

### **9. 참고사항 : 해당없음**

### **10. 관련부서 : 경기도 법무담당관**

## 하남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

하남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시장의 책무)** 하남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주민이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(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의 제정,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(이하 “의견제출”이라 한다)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.

**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** ① 규칙의 제정,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,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.

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

**제4조(의견제출 제외 대상)**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.

1.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
2.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

**제5조(의견제출 방법)**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(전자문서를 포함하며, 이하 “의견제출서”라 한다)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,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.

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.

**제6조(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)**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(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, 이하 “의견제출인”이라 한다)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,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.

**제7조(의견제출 검토)** ① 시장은 규칙의 제정,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규칙의견검토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해야 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「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에 따른 하남시 조례·규칙심의회가 대행한다.

②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.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.

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,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.

1.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

2.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

**제8조(의견의 반영)** 시장은 검토 결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「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자치법규의 입안 절차에 따라 해당 규칙을 제정,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.

**제9조(차별대우의 금지 등)**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 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.

**제10조(비밀 준수의 의무 등)**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을 준수해야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서명		정책기획관
입안자	부서장 직위·성명	정책기획관 박 춘 오
	팀장 직위·성명	법무팀장 홍 은 혜
	담당자 성명·전화번호	최 선 문 (790-5520)

■ [별지 서식]

## 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 의견제출서

의견제출인	성명	[ ] 대표자 ※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3명 이하를 선정하여 √ 표시
	주소	
	전화번호	
	전자우편	
공동 의견제출	[ ] 해당 [ ] 해당되지 않음	대표자 인원 :        명
의견 ※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작성		
참고자료 ※ 필요한 경우 제출,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		

「지방자치법」 제20조 및 「하남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」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       월        일

의견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하남시장 귀하

## 관계법령 발췌서

### 「지방자치법」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8092호, 2021. 4. 20., 일부개정]

- 제20조(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 의견 제출) ① 주민은 제29조에 따른 규칙(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)의 제정,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.
- ②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그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, 제3항에 따른 의견의 검토와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